

신인 뮤지션 발굴 · 육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

한국교육방송공사(이하 “EBS” 라 한다)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콘텐츠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국내 대중음악 신인 뮤지션 지원을 통한 음악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상기 기관들(이하 “양 당사자” 라 한다)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 대중 음악 신인 뮤지션 지원을 통해 음악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업무협약의 범위)

양 당사자는 신인 뮤지션 발굴 · 육성 사업 협력을 통한 음악산업 발전 기반 마련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에 따른 부속 업무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1. 양 당사자는 EBS의 “헬로루키” 와 콘텐츠진흥원의 “K-루키즈 발굴 · 육성 지원사업” 의 성공적인 연계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.
2. 양 당사자는 신인 뮤지션 발굴 · 육성 사업을 통한 음악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“헬로루키” 와 “K-루키즈” 에서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에 상호 홍보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.
3. 양 당사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, 별도 합의 하에 업무를 추진한다.

제3조 (협력사업 세부기준 및 시행절차 약정)

양 당사자는 협력사업의 세부 기준 및 실행 절차를 상호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4조 (정보 제공)

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, 고객 등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제5조 (신의성실의 의무)

양 당사자는 본 협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6조 (비밀유지의 의무)

양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획득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, 배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
제7조 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발생하며,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해지 통보는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제8조 (협약의 변경)

1. 양 당사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2. 본 협약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여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9조 (협약의 해석 등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,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.

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,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3월 19일

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
사장 장해 링원장 김영준

